

부속서 10-나

투자에 대한 안보상 예외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양해를 확인한다.

가. 이 협정문 제10.18조제2항라호에서 언급된 조치는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 및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치이다. 그 조치는 비차별을 기초로 부과되어야 하고 다음의 자국 법 또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 1)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현재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서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 2) 인도의 경우에는, 제10장제18조제2항라호에서 언급된 적용 가능한 조치는 외국환경법(FEMA)에 따라 형성된 규정에 본질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인도는 해당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당사국이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가와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주권을 침범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에 대상인 외국기업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